

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관련 가이드라인

I 영업종료 확정 前(평상시)

□ **영업종료 관련 내부 업무지침(내규) 마련 · 운영**

- 영업종료로 인한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영업종료 관련 내부 업무지침(내규)을 마련하여 운영
- 영업종료 사전공지, 이용자 개별 안내,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 지원, 출금 수수료, 출금대상 사업자, 회원정보 등의 보존·파기, 보관중인 이용자 자산 처리방안 등을 상세히 작성
- 영업종료에 따른 출금지원 정책을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지

II 영업종료 확정 後

1] **금융당국 보고**

-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일(거래지원 종료일)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금융당국에 유선 등으로 영업종료 예정 사실을 보고
- 이용자 보호 세부계획 및 추진일정 등 '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호 계획안(별첨 양식1)' 제출

◆ 금융당국 보고 : 금융정보분석원 및 금융감독원에 각각 보고

✓ 금융정보분석원(가상자산검사과) ☎ 02-2100-1713, infiu@korea.kr

✓ 금융감독원(가상자산감독국) ☎ 02-3145-8166, blockchain@fss.or.kr

② 영업종료 관련 공지

- 영업종료일(거래지원 종료일) 최소 1개월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, 모바일 앱 등 이용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하여 영업종료 사실을 공지(FAQ 등 포함)
 - 영업종료 예정일, 이용자 자산 출금방식, 정상 출금기간, 출금 수수료, 유효한 연락처 및 연락가능 시간 등 영업종료와 관련한 상세한 안내를 포함
- 개별 회원(휴면회원 포함)에게 전화, SMS, 이메일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연락수단을 사용하여 공지 내용을 안내

③ 이용자 신규 회원가입 등 중단

- 영업종료가 공지된 이후 거래지원, 신규 회원가입,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입금을 즉시 중단
- 영업종료가 공지된 이후 입금된 가상자산은 지체없이 반환 처리

④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 지원

- 이용자 소유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(이전, 이체)은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개월 이상(이하 '정상 출금기간'),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담창구 등을 통해 지원
- 사업자는 일정금액(예: 1만원) 이상의 자산을 위탁한 이용자에 대해 영업종료 공지 이후부터 정상 출금기간 동안 주 1회 이상 개별 접촉을 통한 자산 출금 안내
- 출금방식은 개인 지갑, 국내사업자 및 해외사업자 지갑을 통한 출금을 지원

- 정상 출금기간 중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의 출금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하며, 그 이후에도 이용자 자산을 반환하면서 과도한 출금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유의
-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 미요구 이용자 현황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안내
- 다만, 미반환 예치금 또는 가상자산이 없거나 반환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이용자에게는 상기 안내 등을 생략 가능

5 회원정보 등의 보존 및 파기

- 국세기본법 등 개별 법령에 보존의무가 있는 정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보존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파기

6 이용자 자산 관리 강화

- 영업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도 미반환된 이용자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, 사업자는 해킹 등 보안 사고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방식으로 이용자 자산을 보관
- 이용자 자산반환 완료일까지 이용자 자산에 대한 일일대사를 실시하고, **이용자 자산보관 현황**^{*}(별첨 양식2)을 주 1회 금융당국에 통지

* 이용자 명부, 이용자 자산이 보관된 지갑주소, 자산 유형별 잔고, 반환 내역 등

- 예치금이 있는 경우, 예치금 관리기관에 영업종료 사실을 통지하고, 관리기관의 예치금 출금 통제 정책에 적극 협조

- 영업종료 사업자는 이용자 명부 및 이용자 자산 보관·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, 이용자 자산을 임의로 인출 또는 사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

7 변경신고

- 영업종료 후에도 임원 또는 사업장 등 FIU에 신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누락 없이 변경 신고 의무 이행

* 예시 : 임원 변경, 사업장 이전 또는 폐쇄 등

8 기타

- 이용자 자산반환 완료일까지 필수 내부통제 인력을 유지하고, 이용자 자산반환 및 피해보상 조치를 담당하는 책임자 지정

- 영업종료로 인한 이용자 피해발생시 구제 절차 마련

- 거래지원이 종료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처리방법을 안내

* 예시 : 가상자산 발행회사와의 협의내용, 발행회사 연락처 등 포함

- 일정기간 경과 후 미출금된 잔여 이용자 자산에 관한 처리 절차 마련

* 예시 : 공탁, 신탁, 他거래소에 양도, 가상자산 수탁기관 이전, 전문성 있는 외부 기관에 이용자 자산반환 업무 위탁 등 포함

- 영업종료로 인한 인터넷 홈페이지 폐쇄 등에 대비하여 고객센터·전담창구 등 연락처(전화번호, 이메일) 안내

(별첨 양식2-1)

이용자 자산 주간 반환 현황(총괄표)

* 작성기준 : 매주 목요일 24:00

* 제출기한 : 매주 금요일 11:00

(명, 개, 원)

연번	사업자명	주간 반환 완료 이용자수	미반환 이용자 수		지난주 잔고		주간 반환 현황		잔 고	
			KYC 이행	KYC 미이행	예치금(원) (A)	가상자산(개) (B)	예치금(원) (C)	가상자산(개) (D)	예치금(원) (E=A-C)	가상자산(개) (F=B-D)
1										

※ 가상자산은 BTC, ETH, USDT만 산정

(별첨 양식2-2)

이용자 자산 주간 반환 현황 및 잔고 현황

(1) 자산 반환 기간 : 202X년 00월 00일 00시 부터 202X년 00월 00일 00시까지

(2) 가상자산 기준가격 및 잔고수량 : 200X년 00월 00일 00시기준

(단위: 원, 개)

이용자명	USER ID	KYC 이행 여부	자산명	지난주 제출한 원화 예치금 잔액 (A)	원화 예치금 주간 반환 금액 (B)	원화 예치금 잔액(A-B)	지난주 제출한 가상자산 잔고수량 (C)	가상자산 주간 반환 수량 (D)	가상자산 잔고수량 (E=C-D)	가상자산 기준가격 (F)	가상자산 잔액 (원화 환산액, ExF)	이용자별 미반환되고 있는 또는 어려운 사유
홍길동	ABCD	O 또는 X	원화	6,000,000	2,000,000	4,000,000		0.0000	0.0000	0	0	
홍길동	ABCD	O 또는 X	BTC		0	0		0.1000	1.0000	100,000,000	100,000,000	
홍길동	ABCD	O 또는 X	ETH		0	0		1.0000	2.0000	2,500,000	5,000,000	
김순자	KIM	O 또는 X	원화	2,680,000	250,000	2,430,000		0.0000	0.0000	0	0	
김순자	KIM	O 또는 X	BTC		0	0		2.0000	3.0000	100,000,000	300,000,000	
김순자	KIM	O 또는 X	SOL		0	0		0.3000	0.6000	250,000	150,000	
합계	2			8,680,000	2,250,000	6,430,000					405,150,000	

(별첨 양식2-3)

가상자산별 지갑주소

* 해당 일자의 가상자산별 지갑주소를 기재
(2개 이상시 열을 추가하여 옆에 기재 / 작성기준일)

연번	가상자산 종류	체인명 (예)ERC-20))	지갑주소
1	AAVE	ERC	
2	ADD	EOS	

(별첨 양식2-4)

주간 이용자 자산반환 현황

이용자 수			금주 반환 완료된 이용자 수(B)	미반환 이용자 수		
KYC 이행	KYC 미이행	총계(A)		KYC 이행	KYC 미이행	총계(A-B)

주간 이용자 자산반환 안내 이력

일자	안내사항
2000년 00월 00일	예) SMS로 몇 명의 고객에게 안내함 얼마 이상 보유 고객 몇 명에게 전화안내, 몇 명에게 E-MAIL 송부 등
2000년 00월 00일	
2000년 00월 00일	